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53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4. 28. 접수 제18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2, 5, 6, 7, 8, 9, 10,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시멘트벽돌조 58㎡와 3, 4, 5,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조립식패널조 11㎡(각 1, 2층 포함)에서 퇴거하고, 피고들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각 토지의 이전 소유 관계

구 A교회¹⁾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 C은 구 A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지위에 있었다.

나. 교단탈퇴 결의 등

1) 피고 C은 2017. 9. 10. 구 A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동회의(제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공동회의록에 의하면, 위 회의에 재적교인 21명 중 19명의 참석하였고, 위 참석 교인 19명의 만장일치로 구 A교회가 속해 있던 F종교단체 G회(이하 ‘G회’라 한다)에서 탈퇴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탈퇴 결의’라 한다). 한편 2017. 9. 1. 작성된 당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C이 G회 탈퇴를 위하여 2017. 9. 10.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탈퇴 결의 1주일 전인 2017. 9. 3. 구 A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교회부지문제, H회, 교단 소속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17. 9. 10.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피고 C은 G회 탈퇴 후 A교회(이하 ‘A교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지위에서 A교회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A교회 정관 제1조에는 “이 단체의 명칭은 ‘A교회’라 한다”는 내용이, 제2조에는 “A교회는 교회의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 상회(시찰회, H회, 총회)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2017. 9. 27. A교회의 대표자로서 F종교단체 총회에 위와 같은 탈퇴를 선언하는 내용의 교단탈퇴서(이하 ‘이 사건 탈퇴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피고 C은 2019. 12. 15. A교회의 제직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제직회의록에 의하면, 위 회의에 재적 11명 중 7명이 참석하였고, 참석 교인의 만장일치로 A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B에 증여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증여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G회의 면직 통지 등

- 1) 구 A교회가 속해 있던 G회는 2019. 11. 5. 피고 C을 ‘일방적인 교단탈퇴 및 목사직 유기’를 이유로 구 A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면직(해임)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면직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1. 22., 2019. 12. 13., 2020. 2. 4., 2020. 3. 13. 4번에 걸쳐 피고 C에게 위 면직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 2) G회는 2020. 3. 4. 목사 I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위 임시당회장 I은 2020. 4. 2. G회에 원고 교회의 직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 3) 원고 교회는 D를 목사로 청빙하여 2020. 4. 26. D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4. 28. 접수 제18315호로 2020. 4. 2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 9, 12, 13호증, 을 제25, 62, 77, 81,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교회의 주장

- 1) 피고 C은 2017. 9. 10. 구 A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공동회의(제직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위 공동회의에서 구 A교회가 G회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① F종교단체 소속인 구 A교회는 소속 H회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H회의 허가 없이는 임의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구 A교회가 G회를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G회의 탈퇴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탈퇴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이 유효한데, 피고 C은 F종교단체 총회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탈퇴서를 제출하기만 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G회는 2019. 11. 5. 피고 C을 ‘일방적인 교단탈퇴 및 목사직 유기’를 이유로 면직(해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교회2)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 C은 더 이상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2020. 4. 28. 원고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B에 처분하였다.

3) 결국 피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가)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 I은 2020. 4. 2. G회에 원고 교회의 직인변경 신청을 하여, 위 교회의 직인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무권한자인 피고 C이 위조한 직인을 사용하여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B를 설립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행위이며, 피고 B는 이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다) 피고 B는 피고 C이 원고 교회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원고 교회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라) 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 교회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마) 피고 C은 제직회의를 적법하게 개최하지도 않고 이 사건 증여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외형을 만들었다. 이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 C의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위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원고 교회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걸쳐 지어진 원고 교회 소유의 교회사택인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2, 5, 6, 7, 8, 9, 10,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시멘트벽돌조 58㎡와 3, 4, 5,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조립식패널조 11㎡(각 1, 2층 포함)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D는 피고 C에 대한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G회의 장로이자 임원인 J는 피고 C의 교회 업무를 훼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구 A교회는 2017. 9. 10. 이 사건 탈퇴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A교회는 위 시점 이후로 더 이상 G회와 관련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G회의 면직이나 제명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2) 피고 B는 2017. 9.경 A교회의 상호변경에 따라 시작된 단체로서 당시 A교회와 동일한 구성원이 있었고, A교회로부터 예배, 선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따라서 A교회가 이 사건 증여 결의를 거쳐 원고 교회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교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A교회가 G회를 탈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탈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 A교회는 G회를 탈퇴한 A교회로서 존속하게 되고, G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탈퇴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 쟁점이 된다.

나. 관련 법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위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9, 35호증, 을 제49, 50, 75, 83, 85,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A교회가 G회 소속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이 사건 탈퇴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A교회의 정관(갑 제19호증) 제8장 제4조에 의하면, “본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서면위임은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관련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A교회가 G회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구 A교회는 재적교인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후 만장일치로

G회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관이나 관련 법리의 탈퇴 요건을 충족하였다.

② 위 공동의회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구 A교회의 정관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2의 2)항에 의하면,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구 A교회는 당시 재적교인이 30인 미만이므로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F종교단체 헌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되고,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구 A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피고 C이 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탈퇴 결의 1주일 전 2017. 9. 3. 주보를 통하여 공동의회 소집 광고 및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탈퇴 결의는 당시 F종교단체 헌법과 구 A교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③ 원고 교회는 F종교단체 소속인 구 A교회가 G회의 허가 없이는 임의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구 A교회가 G회를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G회의 탈퇴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탈퇴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탈퇴 결의 당시 재적교인의 수와 관련하여 일부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D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0형제834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고소인인 D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2017년 원고 교회의 재적교인이 18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탈퇴 결의는 재적교인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담당 검사는 2020. 12. 11. 이 사건 탈퇴 결의가 효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C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D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1. 4. 9. 광주고등검찰청[2021 고불항(전주) 제47호]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2) G회는 이 사건 탈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G회 소속의 원고 교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 C을 원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면직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목사 I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고, 2020. 4. 26. D를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 교회는 D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 결의로 인하여 구 A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A교회로서 존속하게 되고, 구 A교회의 재산은 A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었으며, G회에 소속된 원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설령 원고 교회가 G회를 탈퇴한 A교회로서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G회가 피고 C을 원고 교회에서 면직한 이 사건 면직 결의는 효력이 없게 되고, 이에 따라 D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교회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지1]

부동산 목록

1. 토지

가. 익산시 K 대 340㎡

나. L 묘지 139㎡³⁾

다. M 대 436㎡

라. N 묘지 152㎡

마. O 종교용지 78㎡

2. 건물(교회사택)

익산시 M, N, O, P 지상 적벽돌 슬라브지붕 2층 건물(교회사택)(시멘트벽돌조, 조립식패널조 포함). 끝.

3) 원고는 위 면적을 '139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1392㎡'는 '139㎡'의 오키임이 명백하다.

[별지2]

참 고 도

토지소재 : 익산시 . .

범 례	
지 역 선	
감 경 선	

토 지					
지 번	지 역	부 호	내 용	면적(㎡)	비 고
	대	요	2, 5, 6, 7, 8, 9, 10, 1, 2	58	시면트널물조 외역측정
	대		3, 4, 5, 2, 3	11	조립식물널조 외역측정
비 고		※ 본 감경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2017. 9. 10. F종교단체 G회에서 탈퇴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 A교회를 ‘구 A교회’라 지칭한다.

2) 원고 교회는 구 A교회의 이 사건 탈퇴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결국 구 A교회와 원고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서는 구 A교회를 ‘원고 교회’로 표기한다.